



<http://bogun.nodong.org>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 02) 2677-4889 | FAX: 02) 2677-1769

문서번호: 정책 2011-070호

전송일자: 2011. 10. 24 (총 3쪽)

수 신: 국회의원 ( )님

참 조: 보좌관

제 목: 의료재앙을 몰고올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 요청 건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병원 및 혈액원), 보훈병원, 원자력 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기관, 의료생활 협동조합 등 한국을 대표하는 150여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4만1천명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약사, 행정 사무직, 시설, 영양과, 기술 기능직등 60여 개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계에서는 가장 큰 전국 단일 산별노조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과 국제적으로는 PSI(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국제공공노련)와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사무노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한미FTA를 비준한 이후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미FTA를 10월 이내에 급박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파탄내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불평등협정으로서,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재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4. 특히,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며, 국민들의 절대 염원인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 영리병원 도입 반대, 공공의료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노조는 10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한미FTA 국회비준이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며, 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한미FTA 국

회비준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 ① 한국의 의약품시장은 개방되고, 약값은 폭등한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관세를 폐지시켜 한국의 의약품 시장을 개방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것입니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독점권)을 확대 보호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 생산을 고사시키고, 신약 개발의 토대까지 무너뜨릴 것입니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는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백지화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전문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하여 고가 외제약 판매를 높이려 할 것이고, 의약품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 ② 영리병원이 급속하게 확대된다.

- 한미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미래 유보’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관련 특례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약국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예를 들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하지만, 한미FTA 협정이 서명된 후 경제자유구역은 3곳이 늘어 전국적으로 6곳(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되었고,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진행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

현재 국내영리병원 허용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영리병원의 급속한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이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이로 인한 영리병원 허용은 자동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무력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 ③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 한미FTA는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한미FTA에 따르면,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건강보험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④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되고, 무상의료 사회는 멀어진다.

-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OECD 수준인 90%로 끌어올려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시장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민영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투자자-정부 제소제도에 의한 소송의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